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 인식조사 연구

Perception on Housing Welfare of Social Welfare Practitioners

김영주*
Kim, Young-Joo

김미희**
Kim, Mi-Hee

박남희***
Park, Nam-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erception on housing welfare of social welfare practitioners. Specific research interest was focused on the area of housing welfare services and necessity, problems when execute housing welfare services, and activating strategy of housing welfare. For the research purpos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537 people who work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including social welfare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and social workers at community welfare centers nationwide by mail and e-mail and 405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PSS 15.0 program.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was the most important service to promote housing welfare. They also indicated the most serious problem was the lack of budget and housing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As main reasons of local government's passive attitude toward housing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respondents mentioned low interest level of housing welfare and lack of housing welfare education. Most of the respondents agree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curricula related to housing welfare and expected to spread interest toward housing welfar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Keywords : Housing Welfare, Social Welfare, Social Worker, Social Welfare Official

주요어 : 주거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I. 서론

국민에게 적절한 주거수준과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최근 복지국가로 지향하는 정책 방향 안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2000년도 이후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도 주거복지본부라는 관련전담부처가 생기는 등 그에 대한 내용이 다양해져 가고 있다(박남희·최재순, 2008). 이처럼 주거복지가 국가복지 정책의 기본적인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주거복지업무 역시 전문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거복지는 여전히 생소한 주제로 인식되어 주거와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사회복지 전공자의 주거 부문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된 업무 수행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곽인숙, 2007). 주거가 인간의 기본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이 분야는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주거복지를 전문 영역으로 다룬 역사가 짧고 그에 대한 개념 정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

황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향후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주거복지에 대한 이해도, 주거복지 관련 업무수행 실태 및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해보고 향후 주거와 복지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업무수행 실태 및 전반적인 의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영역과 내용, 주거복지의 필요성, 주거복지 관련 교육 수혜 여부 및 주거복지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주거복지 구현 방안 등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 주거복지에 대한 업무 전문성 제고와 주거복지와 사회복지간의 업무간 연계성 및 차별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사회복지와 주거복지

일반적으로 복지란 안락하고 만족한 생활상태, 인간의 건강과 번영, 안녕 등으로서 더할 나위없이 만족스런 삶이 영위되며 건강과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하며, 사회복지란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을 성취하기 위한

*정회원(주저자), 중앙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부교수

**정회원(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정교수,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정회원,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겸임교수

사회구성원들의 공통적인 행위와 노력의 체계를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인간의 사회적 기본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고자 상부상조, 자선과 박애, 공공복지, 사회보험, 대인사회서비스, 보편주의 급여라는 다양한 대응양식을 통해 발전해 왔다(홍인옥, 2009).

사회문제란 한 사회구성원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상태,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로서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로서 주거문제는 주택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상태이자 사회구성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는 주거규범과 현재의 주거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거문제의 해결은 인간의 기본권리로서 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태, 2006). 주택이 복지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가 복지비용과 주거비용을 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주거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저소득층이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장영희 · 박은철, 2005).

주택이 가지는 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거정책은 사회정책의 한 부분이며 특히 그 대상이 저소득층인 경우 이는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고철 · 천현숙 · 박능후 · 이태진 · 최현수 · 노언정, 2002).

주거복지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들어서 활발해졌으며 개념 정의에 있어서는 정책학, 행정학, 사회복지 쪽에서 경제적인 효용가치나 분배의 형평성 및 효과성, 정부 정책의 효율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윤주현, 김혜승, 1997; 김성연, 2004; 김영태, 2006). 그런가 하면 주거학 분야에서는 주거복지에 대한 정의를 전 국민이 자신의 주거환경에서 주거서비스를 통해 최고의 만족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거복지의 개념은 대상, 범위, 제도, 기고나 측면에서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박남희, 최재순, 2006), 개별 가구가 기존의 주거관련 제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활동의 총체(한국주거학회, 2007)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거학 측면에서의 주거복지의 개념은 기존의 주거관련 제도를 통하여 개인의 주거욕구를 충족시켜서 주거서비스를 최대한 제공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업무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기구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중앙부처·시·도·시·군·구·읍·면·동사무소로 연결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복지

정책은 중앙에서 기획되고 지방의 행정자치부 조직을 통해 집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시·도의 경우, 보건복지국, 환경복지국,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여성국, 시민복지국, 복지국, 복지여성국, 복지환경국 등의 부서에서 공공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시·군·구의 경우에는 생활복지국, 문화환경복지국, 사회복지과 등의 부서에서 공공복지서비스를 담당하며, 마지막으로 최일선 조직인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이어진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공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1987년 전문인력을 통해 공공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4명에서 시작한 별정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이후 계속 확충되어 2005년에는 903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후에도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증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최일섭 · 이현주, 2006).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는 1997 보건복지부 훈령 제39호 제3조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업무 외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업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업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업무,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업무,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까지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주거 및 보육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계속 확충되고 있는 실정이다(최일섭 · 이현주, 2006).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로 인해 사회복지전담요원의 인력 증원에도 불구하고 1인당 업무 부담이 너무 크고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 수요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또 하나는 서비스 제공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간 연계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가 다르고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상이한 상황에서 주체간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김혜승 · 송하승 · 윤주현, 2004; 최일섭 · 이현주, 2006).

2) 사회복지기관 유형 및 관련 업무

사회복지기관은 설립 주체에 따라 크게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즉, 정부기관은 업무내용 및 규모에 따라 중앙 정부기관과 지방 자치단체로 구분되고, 민간기관은 사회복지를 위한 비영리기관이나 단체를 비롯하여 종교기관, 공제회, 상조회 등과 같은 조직을 포함한다. 이밖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같이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특별 법령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 목적의 공공단체들이 있다(김영모, 2006; 최일섭 · 이현주, 2006).

이와 같은 사회복지기관 중에서도 민간기관인 사회복지관은 복지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은 1921년에 설립된 '태화여자관'으로 초기에는 주로 여성 대상의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오다 일제시대 말기에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기관으로 발전, 강화되었고 1982년부터는 정부의 영세민 대책을 위한 기관으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1989년에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과 함께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제도화됨에 따라 그 수와 규모가 대폭 확충되어 2006년 현재 전국적으로 395개의 사회복지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 분야는 가정기능강화를 위한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 5가지로 대별된다. 이러한 업무 내용들은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사례관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제공한다는 면에서 주거복지와의 연관성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이경희·김영주·김성천, 2006).

사회복지관 업무에 대한 연구 결과,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대센터와 부대사업의 종류 중 가장 많은 것은 재가복지봉사센터(약 95%)였으며 그 다음은 경로식당(78.4%), 어린이집(64.9%), 노인 및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푸드뱅크(각 24.3%), 이동목욕사업(18.9%), 취업알선센터와 청소년 상담실 운영(각 10.8%) 등의 순이었다(김승권·조애저·이건우·박지영, 2005). 이 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사업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재정적인 부담, 감독관리 행정기관의 지나친 요구와 협조 부족, 효과적인 프로그램 관리기술의 축적 부재 및 부적합한 시설과 환경 등이 지적되었다(김승권 외, 2005). 또한 사회복지관 운영의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전문성이 결여된 채 지역 특성이나 주민 요구에 관계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성 없는 서비스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복지서비스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루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가족복지, 지역사회복지, 재가복지, 모부자복지, 아동보육,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노동복지, 교정사업, 부랑인보호, 사회복지관사업, 의료사회사업, 정신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빈곤에 대응하는 소득보전 중심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주민의 복지욕구가 증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정치, 교육,

주거, 인간관계 등으로 그 활동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김영모, 2006; 최일섭·이현주, 2006).

3.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관련업무

1)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관련 행정체계는 정책결정기관(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과 정책집행기관(행정자치부)이 분리되어 정책부처가 정책집행과정을 통제하기 어렵고 피드백을 통한 정책조정이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마다 주거복지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국/과)가 일관되지 않고 명칭 역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혜승 외, 2004). 특히 주거복지관련 전달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전체업무 중 주거복지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4.9% 정도로 주거복지전달인력이 부재한 실정이었다. 또한 공무원 1인이 다수의 프로그램을 담당하다보니 업무의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밖에 주거복지프로그램 실무자 중 주거복지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77.3%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무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같은 연구에서 응답자의 28.5%는 직무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및 전문직 지도감독의 부재를 주거복지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함으로써 수요자를 위한 원활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음을 보여주었다(김혜승 외, 2004).

2) 주거복지 관련 제도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크게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급 측면의 제도로는 협의의 복지수혜 대상자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제도로서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등이 있다. 한편 수요 측면의 제도는 주거비 지원과 관련한 것으로 크게 두가지 형태가 있다. 그중 첫 번째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지원,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특별 용자금 제도이며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제도이다(대한건축학회, 2010).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대상 선정에 위해 층화추출법과 단순무작위표집의 다단계표집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를 관련 영역별로 나누어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로 구분하였다. 이중 지자체 근무자는 서울 및 6개 광역시, 9개 도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 서울의 25개 구와 6개 광역시의 44개 구, 9개 도의 77개 시로 전체 146개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서울 및 6개 광역시, 9개 도를 포함한 전국의 391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총 5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이용한 양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1월~3월까지였으며,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양적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 문항의 초안을 작성, 검토한 후 본조사용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최종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시·군·구 일선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편과 이메일을 이용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초에 배포된 537부의 설문지 중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405부로 회수율은 75%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t 검증, χ^2 검증, 다중응답분석 등으로 분석하였다.

3. 설문문항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직종, 직위, 근무지역, 경력,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1급, 2급)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 전반적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주민 생활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영역의 우선순위, 공공부조가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전반적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해결과제 등의 문항을 포함시켰다.

셋째,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의 주거복지 관련 업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복지관련 업무 수행 경험, 주거복지 관련 업무내용, 공공복지서비스와 주거복지와의 관련성, 주거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인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 주거복지 관련 업무 수행시 문제점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넷째,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 주거복지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관련 교육 수혜 여부, 주거복지 관련 교육의 필요성, 주거복지 관련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의 문항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향후 주거복지 관련 사업 시행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주거복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보완사항,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효과적 방법에 관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IV. 조사결과

1. 응답자 일반사항

총 405명의 조사대상자 중 지자체 근무자가 48.4%(196명), 사회복지관 근무자가 51.6%(209명)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41.5%, 여성이 58.5%로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종에 따른 성별 분포에서도 동일하였다. 응답자의 근무지역 분포를 보면 서울이 1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기(10.4%), 부산(10.1%), 전남(8.9%)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연령 분포는 30대

표 1. 응답자 일반사항

n=405

구분	내용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67	41.5	
	여자	235	58.5	
	계	402*	100.0	
직종	지자체 근무자	196	48.4	
	사회복지관 근무자	209	51.6	
	계	405*	100.0	
근무 지역	서울	63	15.6	
	부산	41	10.1	
	대구	31	7.7	
	인천	14	3.5	
	광주	20	5.0	
	울산	2	0.5	
	대전	6	1.5	
	경기	42	10.4	
	강원	28	6.9	
	충북	13	3.2	
	충남	20	5.0	
	전북	23	5.7	
	전남	36	8.9	
	경북	26	6.4	
	경남	23	8.2	
	제주	6	1.5	
	계	404*	100.0	
	연령	20대	103	25.9
		30대	152	38.2
		40대	118	29.6
50대 이상		25	6.3	
계		398*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12	3.0	
	전문대학 졸업	37	9.2	
	대학교 졸업	262	65.2	
	대학원 졸업	91	22.6	
계	402*	100.0		
소지 자격증	사회복지사1급	327	81.8	
	사회복지사2급	40	10.0	
	기타	33	8.2	
	계	400*	100.0	

*missing data가 있어 n=405와 일치하지 않음

가 3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0대(29.6%), 20대(25.9%), 50대 이상(6.3%)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 중 최연소자는 23세, 최고령자는 60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36.2세였다. 응답자들의 학력 분포는 전체적으로 대학교 졸업이 65.2%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이상도 22.6%나 되었다. 이는 직종에 따른 분포 결과에서도 거의 동일하여 지자체 근무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68.4%), 전문대학 졸업과 대학원 이상이 각각 13.5%를 차지하였다. 한편 사회복지관 근무자들은 지자체 근무자들보다 학력이 좀 더 높게 나타나 대학교 졸업자가 62.2%, 대학원 이상도 3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근무기관을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관(51.2%), 시·구청(46.3%), 동사무소(2.0%)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은 최하 1개월에서 최고 30년 3개월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근무기간은 약 5년 3개월이었다. 조사대상자들 중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가 전체의 81.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사회복지사 2급을 소지한 경우는 10.0%로 그 다음이었으며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8.0%였다. 직종에 따른 소지 자격증을 파악한 결과 역시 이와 유사하여 지자체 근무자와 사회복지관 근무자 모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가 각각 75.0%와 88.0%로 가장 높았으나 지자체 근무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응답자가 15.1%였다.

2. 전반적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1) 주민 생활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영역

응답자들로 하여금 현재 근무 중인 지역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 영역 7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우선순위로 3개 고르게 한 후 이를 다중응답분석으로 정리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가장 많은 72.6%의 응답자들이 '고용' 분야를 언급하였고, '주거'(64.7%), '교육'(60.2%), '보건'(59.0%)의 순으로 답하였다. 이 중 지자체 근무자들은 고용(82.7%) 문제를, 사회복지관 근무자들은 주거(67.0%) 문제를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의 1차적인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인 만큼 경제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주거를 통한 안정된 생활환경의 확보가 중요하

표 2. 주민 생활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영역 우선순위

서비스영역	지자체 f(%)	복지관 f(%)	전체 f(%)
보건	119(60.7)	120(57.4)	239(59.0)
고용	162(82.7)	132(63.2)	294(72.6)
주거	122(62.2)	140(67.0)	262(64.7)
교육	113(57.7)	131(62.7)	244(60.2)
체육	5(2.6)	8(3.8)	13(3.2)
문화	60(30.6)	85(40.7)	145(35.8)
관광	5(2.6)	4(1.9)	9(2.2)
계	196(100.0)	209(100.0)	405(100.0)

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2) 공공부조의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되는 정도

현재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료와 유지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 방식의 공공부조가 지역주민의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전혀 도움이 안된다 1점~매우 도움이 된다 4점)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42.7%의 응답자들은 '도움이 된다'고 한 반면 57.3%의 응답자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2.33점이었다. 한편 직종에 따른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사회복지관 근무자들(평균 2.25점)이 지자체 근무자들(평균 2.42)에 비해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지자체 근무자들에 비해 사회복지관 근무자들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현장에서 맞부딪치는 가운데 이들의 생활상의 문제점과 요구를 좀 더 잘 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표 3. 공공부조의 주거복지 향상 도움정도

직종	Mean	SD	t value
지자체 (n=189)	2.42	.786	2.343*
복지관 (n=202)	2.25	.697	

*p<.05 수준에서 유의적임

위 문항에서 주거급여 방식의 공공부조가 지역주민의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은 결과 77.3%의 조사대상자들은 '현행 주거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으며 지자체 근무자들과 사회복지관 근무자들간 응답에 통계적인 의미 차이는 없었다.

표 4. 주거급여가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도움 안되는 이유

이유	지자체 f(%)	복지관 f(%)	전체 f(%)	χ ² value
현행 주거급여수준이 너무 낮으므로	70(77.8)	104(77.0)	174(77.3)	N.S.
현행 수급자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으므로	6(6.7)	14(10.4)	20(8.9)	
차상위계층이 제외되어 있어서	4(4.4)	9(6.7)	13(5.8)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부족으로급여전달업무가 원활하지못해	7(7.8)	3(2.2)	10(4.4)	
계	87(100.0)	130(100.0)	217(100.0)	

N.S. Not Significant

3) 전반적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해결과제

지역사회에서 전반적인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우선순위로 3가지 선택하여 적게 한 후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84.4%의 응답자들은 '경제적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문제(68.3%)’와 ‘의료 및 복지시설문제(64.4%)’를 들어 앞서 <표 2>에 제시된 결과와 일치된 응답을 나타냈다. 지자체 근무자와 사회복지관 근무자들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거문제와 의료복지시설문제인데 이는 사회복지관 근무자들이 지역주민의 주거를 방문하거나 직접 상대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주거문제를 의료 복지시설보다 더 많이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경제적 문제’와 ‘주거문제’ 그리고 ‘의료 및 복지시설’ 부족이라고 생각하였다.

표 5.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해결과제

해결과제	지자체 f(%)	복지관 f(%)	전체 f(%)
경제적 문제	167(85.6)	174(83.3)	341(84.4)
주거문제	144(73.8)	132(63.2)	276(68.3)
의료 및 복지시설	149(76.4)	111(53.1)	260(64.4)
불량한 교육환경	41(21.0)	49(23.4)	90(22.3)
비행청소년 또는 폭력우범	9(4.6)	24(11.5)	33(8.2)
이웃간의 무관심 및 불화	13(6.7)	59(28.2)	72(17.8)
문화시설 부족	56(28.7)	70(33.5)	126(31.2)
계	195(100.0)	209(100.0)	404(100.0)

3. 주거복지 관련 업무에 대한 인식

1) 복지관련 업무 수행 경험

조사대상자인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에게 지금까지 관여해 본 경험이 있는 복지관련 업무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71.1%의 응답자들이 노인복지 분야를 언급하였고, 아동복지(63.7%), 장애인복지(60.2%) 등의 순이었다. 이를 직종별로 비교한 결과 지자체 근무자들은 노인복지(79.1%), 공공부조(75.5%), 장애인복지(73.5%), 아동복지(66.3%)의

표 6. 관여 경험있는 복지관련 업무(중복응답)

복지관련업무	지자체 (n=196) f(%)	복지관 (n=209) f(%)	전체 (N=405) f(%)	χ^2 value
공공부조	148(75.5)	34(16.3)	182(44.9)	143.464***
사회보험제도	30(15.3)	23(11.0)	53(13.1)	N.S.
가족복지	83(42.3)	120(57.4)	203(50.1)	9.526**
아동복지	130(66.3)	128(61.2)	258(63.7)	N.S.
노인복지	155(79.1)	133(63.6)	288(71.1)	11.535***
장애인복지	144(73.5)	100(47.8)	244(60.2)	27.726***
여성복지	126(64.3)	68(32.5)	194(47.9)	40.288***
지역사회복지	94(47.9)	133(63.6)	227(56.0)	9.839**
재가복지	88(44.9)	148(70.8)	236(58.3)	27.552***
청소년복지	77(39.3)	87(41.6)	164(40.5)	N.S.
교정사업	9(4.6)	20(9.6)	29(7.2)	N.S.
부랑인보호	73(37.2)	13(6.2)	86(21.2)	58.208***
노동복지	21(10.7)	6(2.9)	27(6.7)	10.000**

p<.01 수준에서 유의적임 *p<.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N.S. Not Significant

순이었고, 사회복지관 근무자들은 재가복지(70.8%), 노인복지(63.6%), 지역사회복지(63.6%), 아동복지(61.2%) 순이었다. <표 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자체 근무자들의 주요 업무내용이 복지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하는 것들이 대부분인 만큼 사회복지관 근무자들과 이와 관련된 업무분야(공공부조, 가족·노인·장애인·여성복지, 지역사회복지, 부랑인보호, 노동복지 등)에서 차이가 있었고, 지자체 근무자가 공공부조, 노인·장애인·여성복지, 부랑인보호, 노동복지 등의 업무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복지관 근무자의 응답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 업무의 공공성 여부에 따라 경험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 주거복지 관련 복지업무

응답자들이 지금까지 관여해 본 경험이 있는 복지관련 업무 중 특히 주거복지와 관련성이 많다고 생각되는 업무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조사하여 다중응답분석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56.3%의 응답자들은 재가복지업무를 1순위로 꼽았으며 그 다음은 노인복지(46.7%), 가족복지(38.6%), 장애인복지(37.6%), 공공부조(35.8%)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자체 근무자들은 노인복지(48.1%), 장애인복지(42.3%), 재가복지(38.6%) 순으로 지적하였고, 사회복지관 근무자들은 재가복지(72.5%), 가족복지(40.1%), 지역사회복지(34.8%) 순으로 지적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주민이 개별 주택에서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업무가 지적되었고 응답자들 중 지자체 근무자는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와 같은 개별 복지를, 사회복지관 근무자들은 재가복지와 가족복지를 주거복지 관련 업무로 지적하여 업종에 따른 일부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표 7. 주거복지와 관련성이 많은 복지업무

복지관련업무	지자체 f(%)	복지관 f(%)	전체 f(%)
공공부조	95(34.4)	47(22.7)	142(35.8)
사회보험제도	10(5.3)	9(4.3)	19(4.8)
가족복지	70(37.0)	83(40.1)	153(38.6)
아동복지	36(19.0)	22(10.6)	58(14.6)
노인복지	91(48.1)	54(26.1)	185(46.7)
장애인복지	80(42.3)	69(33.3)	149(37.6)
여성복지	29(15.3)	12(5.8)	41(10.3)
지역사회복지	32(16.9)	72(34.8)	104(26.3)
재가복지	73(38.6)	150(72.5)	223(56.3)
청소년복지	6(3.2)	5(2.4)	11(2.8)
교정사업	4(2.1)	1(0.5)	5(1.3)
부랑인보호	33(17.5)	39(18.8)	72(18.2)
노동복지	3(1.6)	5(2.4)	8(2.0)
계	189(100.0)	207(100.0)	396(100.0)

3) 공공복지서비스와 주거복지와의 관련성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공공복지서비스의 내용(주택관리

공단 홈페이지)별로, 각각의 서비스 업무와 주거복지와의 관련 정도를 4점 척도(전혀 관련없다 1점~매우 관련있다 4점)로 파악한 결과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제시된 8개 복지서비스 업무 중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평균 3.75점)이 주거복지와 가장 관련이 많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다음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3.41점), ‘지역주민용 커뮤니티 공간조성(3.34점)’ 등이었다. 한편 주거복지와의 관련성이 가장 적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지역주민 경조사지원서비스(2.54점)’였다. 이러한 내용을 직종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관 근무자들이 지자체 근무자들에 비해 주거복지와의 관련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관 근무자들은 지자체 근무자들에 비해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및 환경개선, 주민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업무가 주거복지와 많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최근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서도 나타났듯이, 주거복지 분야에서 지역주민간의 공동체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표 8. 공공복지서비스 업무별 주거복지와의 관련성

복지서비스업무	지자체 Mean(SD)	복지관 Mean(SD)	전체 Mean(SD)	t value
지역주민용 커뮤니티 공간조성(n=403)	3.17(.769)	3.51(.614)	3.34(.714)	-4.899***
자연주민 공유공간 환경개선(n=403)	3.04(.856)	3.45(.687)	3.25(.801)	-5.426***
지역주민 참여증진 프로그램운영(n=402)	2.84(.868)	3.25(.811)	3.05(.864)	-4.965***
지역주민 생활지원 서비스(n=401)	3.14(.873)	3.38(.815)	3.26(.851)	-2.876**
지역주민 교육문화 프로그램운영(n=400)	3.27(.780)	3.52(.725)	3.40(.762)	-3.282***
지역주민 자활지원 서비스(n=399)	3.18(.799)	3.22(.840)	3.20(.820)	N.S.
지역주민 경조사지원 서비스(n=397)	2.41(.868)	2.67(.868)	2.54(.877)	-3.008**
주거환경 개선사업(n=398)	3.70(.606)	3.80(.517)	3.75(.563)	N.S.

p<.01 수준에서 유의적임 *p<.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N.S. Not Significant

4) 주거복지 관련 사업 인식도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4점 척도(전혀 모른다 1점~매우 잘 알고 있다 4점)로 질문하여 평균값을 파악한 결과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도 점수가 평균 3.2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집수리사업단(3.18점)’, ‘주거환경개선사업(3.1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가구

주택 등 매입임대사업’에 대해서는 평균 2.48점으로 가장 인식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직종별로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 근무자들의 인식도가 복지관 근무자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직종에 따라 주거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9. 주거복지 관련 사업 인식도

프로그램	지자체 Mean(SD)	복지관 Mean(SD)	전체 Mean(SD)	t value
영구임대주택(n=402)	3.22(.582)	3.21(.584)	3.22(.583)	N.S.
국민임대주택(n=395)	2.94(.562)	2.85(.598)	2.89(.582)	N.S.
10년 장기임대주택(n=390)	2.63(.594)	2.58(.643)	2.61(.619)	N.S.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지원(n=384)	2.54(.616)	2.56(.632)	2.55(.624)	N.S.
근로자서민 주택전월 세자금지원(n=386)	2.73(.686)	2.62(.638)	2.67(.663)	N.S.
집수리사업단(n=397)	3.34(.611)	3.03(.701)	3.18(.676)	4.650***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사업(n=390)	2.63(.740)	2.35(.647)	2.48(.705)	3.838***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n=390)	2.79(.779)	2.32(.676)	2.54(.763)	6.383***
주거급여 지원(n=396)	3.45(.629)	2.63(.685)	3.03(.776)	12.388***
불량주택 및 주거환경정비(n=392)	3.02(.680)	2.72(.691)	2.86(.700)	4.210***
모기지론 등 주택금융지원(n=393)	2.60(.649)	2.68(.689)	2.64(.670)	N.S.
국민주택기금(n=391)	2.62(.622)	2.67(.641)	2.64(.632)	N.S.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지원(n=394)	3.15(.650)	2.68(.690)	2.90(.710)	6.975***
장애인 그룹홈 지원(n=391)	2.93(.664)	2.96(.642)	2.95(.652)	N.S.
주거환경개선사업(n=395)	3.15(.635)	3.11(.619)	3.13(.626)	N.S.
주민복지시설 확충(n=384)	2.39(.628)	2.58(.696)	2.49(.670)	-2.779**

p<.01 수준에서 유의적임 *p<.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N.S. Not Significant

5)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업 및 프로그램 중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주거복지증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내용을 우선순위대로 세 가지씩 기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중응답분석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표 10>과 같이 가장 많은 조사대상자들(48.3%)은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프로그램을 1순위로 지목하였으며 그 다음은 ‘국민임대주택’(45.7%), ‘근로자서민주택 전월세자금지원’(35.5%), ‘집수리사업단’(2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 주거복지 관련 업무 수행시 문제점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파악한 결과 전체적으로 40.5%의 응답자들은 ‘예산 및 지원기관의 부족’을 가장

표 10.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	지자체 f(%)	복지관 f(%)	전체 f(%)
영구임대주택	86(46.5)	99(50.0)	185(48.3)
국민임대주택	80(43.2)	95(48.0)	175(45.7)
10년 장기임대주택	33(17.8)	34(17.2)	67(17.5)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지원	42(22.7)	49(24.7)	91(23.8)
근로자서민주택전월세자금지원	60(32.4)	76(38.4)	136(35.5)
집수리사업단	53(28.6)	42(21.2)	95(24.8)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사업	22(11.9)	11(5.6)	33(8.6)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45(24.3)	40(20.2)	85(22.2)
주거급여 지원	16(8.6)	11(5.6)	27(7.0)
불량주택 및 주거환경정비	22(11.9)	31(15.7)	53(13.8)
모기지론 등 주택금융지원	11(5.9)	7(3.5)	18(4.7)
국민주택기금	4(2.2)	7(3.5)	11(2.9)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지원	5(2.7)	18(9.1)	23(6.0)
장애인 그룹홈 지원	12(6.5)	19(9.6)	31(8.1)
주거환경개선사업	40(21.6)	40(20.2)	80(20.9)
주민복지시설 확충	8(4.3)	10(5.1)	18(4.7)
계	185(100.0)	198(100.0)	383(100.0)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밖에 ‘주거복지관련 프로그램 부족(29.9%)’, ‘주거복지관련 지식 부족(16.8%)’ 등도 주거복지관련 업무 수행시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직종에 따라 비교한 결과 지자체 근무자들은 사회복지관 근무자들에 비해 ‘주거복지 관련 프로그램 부족’을 지목한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관 근무자들은 지자체 근무자들에 비해 ‘주거복지 관련 지식 부족’ 문제를 언급한 경우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으로써 업무분야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표 11. 주거복지업무 수행 관련 문제점

문제점	지자체 f(%)	복지관 f(%)	전체 f(%)	χ^2 value
주거복지관련 지식 부족	17(8.7)	51(24.4)	68(16.8)	17.910***
주거복지관련 프로그램 부족	73(37.2)	48(23.0)	121(29.9)	9.843**
예산 및 지원기관 부족	85(43.4)	79(37.8)	164(40.5)	N.S.
전문인력 부족	26(13.3)	19(9.1)	45(11.1)	N.S.
관련교육 부족	5(2.6)	10(4.8)	15(3.7)	N.S.

p<.01 수준에서 유의적임 *p<.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N.S. Not Significant

4. 주거복지 교육에 대한 인식

1) 주거복지 관련 교육 경험

조사대상자들인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이 예전에 주거 또는 주거복지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파악한 결과 대다수인 90.7%가 경험이 없다고 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표 12>.

주거복지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

답자(49명)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의 교육을 받았는지 질문한 결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주거복지에 관한 보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6.9%였으며,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배웠다고 답한 비율이 28.6%였다. 이러한 응답내용을 직종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지자체 근무자들의 경우 현재 근무 중인 부서에서 보충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73.9%, 사회복지관 근무자는 대학에서 교과목을 수강한 비율이 34.0%였다.

주거복지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교육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관련 교과목이 없어서’라고 답한 경우가 40.2%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복지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24.1%)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표 12>. 이러한 내용을 직종별로 비교한 결과 지자체 근무자들은 ‘취업이나 자격증과 관련 없어서’와 ‘관련 교과목이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좀 더 높았던 반면 복지관 근무자들은 ‘주거복지 교육을 담당할 사람이 없어서’와 ‘주거복지에 관심이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현재 주거복지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미비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는 인력의 양성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박남희·최재순, 2006).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 및 복지관련 기관 등에서 다양한 주거복지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표 12. 주거복지 관련 교육경험

구분	지자체 f(%)	복지관 f(%)	전체 f(%)	χ^2 value	
교육 경험	예	23(11.7)	14(6.9)	37(9.3)	N.S.
	아니오	173(88.3)	189(93.1)	362(90.7)	
	계	196(100.0)	203(100.0)	399(100.0)	
주거복지 교육비 실행 이유	취업 혹은 자격증과 무관	18(11.9)	7(4.3)	25(8.0)	9.162*
	관련교과목 부재	72(47.7)	68(42.0)	140(44.7)	
	관련교육 담당자부재	26(17.2)	38(23.5)	64(20.4)	
	주거복지에 무관심	35(23.2)	49(30.2)	84(26.8)	
계	151(100.0)	162(100.0)	313(100.0)		

*p<.05 수준에서 유의적임
N.S. Not Significant

2) 주거복지 관련 교육의 필요성

향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확산 될 것이라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82.0%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복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한 결과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82.2%로 주거복지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표 13>.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거복지지원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전체 업무 중 주거복지 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4.9%로 주거복지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거복지 프로그램 실무자 중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77.3%로 전

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혜승 외, 2004).

표 13. 주거복지 관심 확산 및 교육의 필요성

구분		지자체 f(%)	복지관 f(%)	전체 f(%)	χ^2 value
관심확산	예	161(83.4)	167(80.7)	328(82.0)	N.S.
	아니오	32(16.6)	40(19.3)	72(18.0)	
	계	193(100.0)	207(100.0)	400(100.0)	
교육필요성	예	160(83.8)	163(80.7)	323(82.2)	N.S.
	아니오	31(16.2)	39(19.3)	70(17.8)	
	계	191(100.0)	202(100.0)	393(100.0)	

N.S. Not Significant

3) 주거복지 관련 교육내용

주거복지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교육이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주택정책 및 행정’(80.7%), ‘주거복지 프로그램’(79.5%), ‘주거복지 수혜 대상자에 대한 이해’(63.4%)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표 14>.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한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4. 주거복지 교육내용

교육내용	지자체 f(%)	복지관 f(%)	전체 f(%)
주거복지 수혜대상자의 이해	92(56.1)	118(70.7)	210(63.4)
주택법	40(24.4)	46(27.5)	86(26.0)
주택정책 및 행정	130(79.3)	137(82.0)	267(80.7)
주거복지 프로그램	124(75.6)	139(83.2)	263(79.5)
주택 관련 세제	26(15.9)	24(14.4)	50(15.1)
주택금융	48(29.3)	26(15.6)	74(22.4)
주택관리	25(15.2)	8(4.8)	33(10.0)
계	164(100.0)	167(100.0)	331(100.0)

4) 주거복지 관련 교육대상 및 교육 참여의사

주거복지 교육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주거복지 담당공무원’이라는 응답비율이 5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사회복지사’(19.5%), ‘전체 공무원’(15.0%)의 순이었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에게 대학 혹은 주택관련기관(건설교통인재개발원,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주거 관련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결과 대다수인 86.4%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표 15>.

표 15. 주거복지 관련 보수교육 참여 의사

참여의사	지자체 f(%)	복지관 f(%)	전체 f(%)	χ^2 value
예	154(86.0)	157(86.7)	311(86.4)	N.S.
아니오	25(14.0)	24(13.3)	49(13.6)	
계	179(100.0)	181(100.0)	360(100.0)	

N.S. Not Significant

주거복지 관련 교육이 필요없다고 답한 응답자들(88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주거복지 교육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39.8%), ‘주거복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30.7%), ‘주거복지 교육은 아직 시기상조이다’(17.0%), ‘주거복지 교육기관이 없다’(12.5%)는 이유를 들었다.

5.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1) 주거복지 관련 사업 시행시 고려사항

주거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 및 사업을 개발하거나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42.2%의 응답자들이 ‘소요예산의 확보’라고 답하였으며 30.6%는 ‘지역주민의 욕구 및 호응도’, 22.7%는 ‘사업의 가치 및 필요성’이라고 하였다.

표 16. 주거복지 관련 사업 시행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지자체 f(%)	복지관 f(%)	전체 f(%)	χ^2 value
소요예산의 확보	82(41.8)	89(42.6)	171(42.2)	N.S.
사업의 가치 및 필요성	50(25.5)	42(20.1)	92(22.7)	N.S.
전문인력 확보	11(5.6)	11(5.3)	22(5.4)	N.S.
지역주민의 욕구 및 호응도	59(30.1)	65(31.1)	124(30.6)	N.S.
필요시설 및 장비 확보	3(1.5)	3(1.4)	6(1.5)	N.S.

N.S. Not Significant

2) 주거복지 업무 수행을 위한 보완사항

조사대상자에게 현재 일하고 있는 근무 부서에서 주거복지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갖추거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전문지식과 교육’(68.4%),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구축’(64.1%), ‘주거복지 관련기관과의 연계’(54.5%)의 순으로 언급하였다<표 17>. 지자체 근무자들은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구축’(66.1%), ‘전문지식과 교육’(62.0%), 인력확충(56.8%) 순으로 지적하였고, 사회복지관 근무자들은 ‘전문지식과 교육’(74.5%)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구축’(62.3%),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의 연계(59.3%) 순으로 지적하였다. 지자체 근무자들은 운영시스템과 전문적인 교육을 더 중시한 반면 사회복지관 근무자들은 이에 못지 않게 주거복지 관련기관과의 연계도 중시하여 업무의 원활한 연결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7. 주거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

보완사항	지자체 f(%)	복지관 f(%)	전체 f(%)
인력 확충	109(56.8)	98(48.0)	207(52.3)
전문지식과 교육	119(62.0)	152(74.5)	271(68.4)
전문부서 확보	92(47.9)	61(29.9)	153(38.6)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구축	127(66.1)	127(62.3)	254(64.1)
대민 홍보	17(8.9)	39(19.1)	56(14.1)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의 연계	95(49.5)	121(59.3)	216(54.5)
계	192(100.0)	204(100.0)	396(100.0)

3)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효과적 방법

향후 지역주민의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한 결과 67.2%의 응답자들은 ‘주거급여 대신 보다 안정적인 형태의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존의 주거복지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25.7%)을 언급하였다. 주거급여수준을 지금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한 25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상폭을 질문한 결과 최하 10%에서 최고 40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적정 인상폭에 대한 평균값은 90.4%였다. 현재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연동되어 있어서 생계급여가 오르는 비율만큼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8.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효과적 방법

방법	지자체 f(%)	복지관 f(%)	전체 f(%)	χ^2 value
주거급여수준을 대폭 인상한다	14(8.0)	12(6.3)	26(7.1)	N.S.
주거급여방식 대신 보다 안정적 형태의 주거를 제공한다	113(64.2)	133(70.0)	246(67.2)	
기존의 주거복지관련사 업 및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	49(27.8)	45(23.7)	94(25.7)	
계	176(100.0)	190(100.0)	366(100.0)	

N.S. Not Significant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업무수행 실태 및 전반적인 의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전반적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주민 생활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영역은 고용, 주거, 교육 분야였다. 이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이 ‘주거’를 ‘경제적 문제’나 ‘고용’ 다음으로 중요한 복지 분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공부조는 주거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방식 대신 보다 안정적인 형태의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기존의 주거급여 계산방식에 더해 가구의 특성을 추가하는 등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해결과제로는 ‘경제적 문제’와 ‘주거문제’를 우선적으로 언급하였다. 즉 경제와 연결된 고용과 주거의 문제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의 인식에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복지관 근무자들은 지역주민의 주거를 방문하거나 직접 상대하는 일이 더 많아서 주거문제를 의료 복지시설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주거복지 관련 업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복지 관련 업무에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 경험이 많았고, 주거와 관련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복지 분야 업무로 ‘재가복지’, ‘노인복지’, ‘가족복지’, ‘장애인복지’ 등 복지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업무가 두드러지는 분야를 언급하였다. 정부나 지자체가 앞으로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프로그램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들어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회복지관 근무자들은 지자체 근무자들에 비해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및 환경개선, 주민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업무가 주거복지와 많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거복지와 관련된 업무수행 시 문제점으로 지자체 근무자는 예산 및 지원기관의 부족함을 많이 지적하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부족함을 언급하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향후 주거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예산확보에 주력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수혜 대상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보다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주거복지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주거복지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된 이유는 관련 교과목이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주거복지 업무 수행시 보강해야 할 사항으로 전문지식과 교육,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하는 한편 대학 혹은 주택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주거 관련 보수교육에 대다수의 응답자가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거복지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회복지 자격증 관련 교과목에 주거 관련 교과목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사회복지 전공 과목에 주거 관련 과목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고, 향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의 확산 여부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관심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 대부분이 학문영역으로서의 사회복지 내에서 주거복지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향후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지금보다 더욱 커져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넷째,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조사한 결과 소요 예산 확보와 지역 주민의 욕구 및 호응도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복지에는 예산이 최우선시 되고 또한 수혜 대상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주거복지업무 수행을 위해서 전문지식이나 교육,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주거복지기관과의 연계 등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주거복지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서의 프로그램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전체적으로 볼 때 지자체 근무자와 복지기관 종사자간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지자체 종사자가 공무원 신분의 정책이나 행정업무의 집행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복지기관 종사자는 그 업무의 현장 전달자나 수행자 역할을 하게 되어 지자체 종사자보다 관련자의 전문성이나 대민 서비스 부분에 적극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본 연구는 최근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관련 업무 수행 실태와 주거복지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사회복지라는 학문 영역 속에서 주거복지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세부전공을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사회복지의 전공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전공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종합적 내용을 토대로 주거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토대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고철 · 천현숙 · 박능후 · 이태진 · 최현수 · 노연정 (2002).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 광인숙 (2007). 주거복지와 사회복지. 한국주거학회지 「주거」, 1(3), 5-12.
3. 김성연 (2004).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주거복지지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주택도시, 8, 124-131.
4. 김승권 · 조애저 · 이진우 · 박지영 (2005). 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영모 (2006). 사회복지학. 고현출판부.
6. 김영태 (2006). 주거복지에 대한 이론적 개관 및 향후 정책과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7(1), 127-134.
7. 김혜승 · 송하승 · 윤주현 (2004).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8. 대한건축학회 편 (2010). 주거론. 기문당.
9. 박남희 · 최재순 (2006). 주거학 전공자를 위한 주거복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7(3), 89-98.
10. 박남희 · 최재순 (2008). 주민자치센터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연구 -인천시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 123-132.
11. 윤주현 · 김혜승 (1997). 주거복지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 국토연구원.
12. 이경희 · 김영주 · 김성천 (2006).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사회복지관과 관리사무소의 업무 역할 분담 및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관리 체계 개선방안.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13. 장영희 · 박은철 (2002).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 최일섭 · 이현주 (2006).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5. 홍인옥 (2009). 사회복지와 주거문제. 제3회 주거복지사 자격 연수자료집, 한국주거학회, 75-83.
16. 한국주거학회 (2007). 주거복지론. 교문사.
17.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ohom.co.kr

접수일(2010. 9. 27)

수정일(1차: 2010. 10. 31, 2차: 2010. 11. 25)

게재확정일자(2010. 12. 2)